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981
----------	------

발의연월일 : 2017. 9. 1.

발의자 : 박정·임종성·김철민

소병훈·김현권·박찬대

원혜영·위성곤·홍의락

정성호·김병욱·김영호

윤후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농업기계 정비·수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5,400여 명으로 적정 인원으로 추정되는 6,600여 명보다 약 23%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업계열 고등학교 졸업생이 급감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한편 농업기계의 복잡화·전문화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농업현장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정비·수리기사의 전문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도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정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정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정비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육성·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정비전문인력의 육성·관리를 위한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사업
3. 그 밖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전문인력의 육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1조의2(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정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정비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육성·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u></p> <p><u>1.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u></p> <p><u>2. 정비전문인력의 육성·관리를 위한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사업</u></p> <p><u>3. 그 밖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u>② 제1항에 따른 정비전문인력의 육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